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의 회 운 영 위 원 장)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136 |
|----------|-----|

제안연월일 : 2018. 1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정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고, 2006년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로 주민들이 지방의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주민요구에 부응하여 제5대 경상북도의회에서 9건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10대 의회에서는 315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지원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의원이 입법정책관에게 과제를 의뢰하고, 입법정책관은 의뢰받은 과제를 처리하여 그 결과물을 의원에게 제출·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의원이 입법정책관에게 과제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입법정책관은 의원과 협의하여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입법정책관이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의원은 입법정책관에게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문을 의뢰하고, 입법정책관은 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고, 정책자문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등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3. 규 칙 안 : 붙임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5. 참고사항 : 붙임참조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제”라 함은 자치법규안과 현안과제를 말한다.

가. “자치법규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의회규칙안을 말한다.

나. “현안과제”라 함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을 말한다.

2. “입법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라 함은 과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를 말한다.

3. “법제심사”라 함은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안의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책자문”이라 함은 과제의 처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제의의뢰와 처리)** ① 의원은 입법정책관에게 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과제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제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입법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법정책관은 과제의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법정책관은 과제를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과제의 처리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입법정책관은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제담당자는 입법정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제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⑥ 입법정책관은 과제가 완료되면 과제를 의뢰한 의원에게 결과물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과제처리의 전문성 등 제고)** 입법정책관은 과제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토론회 실시 등)** ① 의원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입법정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토론회 개최 요청서를 입법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법정책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개최의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④ 입법정책관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입법토론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법제심사 등)** ① 입법정책관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조회 전에 법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입법정책관은 법제심사를 위하여 유권해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입법정책관은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제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자문 등)** ①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관에게 정책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입법정책관이 정책자문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입법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의뢰가 있을 경우 정책자문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에게 정책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산지원)**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전문가 등이 자문요청에 응한 경우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입법정책지원 과제의뢰서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귀하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규칙」 제3조에 따라 과제를 의뢰합니다.

|        |                                                                                                           |
|--------|-----------------------------------------------------------------------------------------------------------|
| 과제명    |                                                                                                           |
| 과제의 종류 | ① 자치법규안(조례안, 규칙안)의 성안과제<br>② 분석 및 검토의견을 포함한 연구과제<br>③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에 기초한 조사과제<br>④ 자치법규안(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심사과제 |
| 주요목적   |                                                                                                           |
| 요청사항   | ① 입법토론회 ② 법제심사 ③ 정책자문 ④ 유권해석(법제처 등)                                                                       |
| [주요내용] |                                                                                                           |
|        |                                                                                                           |

년 월 일

위원장 ○ ○ ○ 또는 의원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 입법정책지원 과제처리대장

| 연번 | 연 월 일 | 과제요구자 | 종 류 | 건 명 | 처리결과<br>제출일 | 담당자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 조례안·규칙안·연구과제·조사과제·검토과제로 구분 기재함

[별지 제3호 서식]

##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 귀하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규칙」 제5조에 따라 입법토론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                         |  |
|-------------------------|--|
| 대상조례안 제명                |  |
| 토론회 개최 사유               |  |
| 개최시기 및 개최장소             |  |
| 추천하는 전문가(소속)            |  |
| 참석요청 단체명                |  |
| 비고 : 기타 입법토론회 개최시 요청 사항 |  |

※ 입법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법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원 이내로 함.

년 월 일

위원장 ○ ○ ○ 또는 의원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 법제심사결과보고서

☐ 조 례 명 :

☐ 검토기간 :

☐ 법체계 검토결과

| 현행안 | 근거법령 | 위반이유 |
|-----|------|------|
|     |      |      |

☐ 자구 검토결과

| 현행안 | 수정안 | 수정이유 |
|-----|-----|------|
|     |     |      |

상기와 같이 심사함

년 월 일

작성자 :

확인자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